

#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1. 회의개요

가. 회 의 명 :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나. 회의일시 : 2019년 4월 4일(목요일) 10:30

다. 회의장소 : 2층 회의실

라. 참석인원 : 재직인원 10명중 참석 7명

마. 회의순서

- 1)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2) 성원보고
- 3) 회장인사
- 4) 보고사항
  - 가) 전차회의록 처리
  - 나) 개인회원 가입 현황 보고
- 5) 부의(안) 심의
  - 가)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안)
  - 나) 회원 규정 개정(안)
  - 다) 회장선거 규정 제정(안)
- 6) 기타사항
- 7) 폐회선언

## 2. 회의내용

가.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무처장 : 식순에 의해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 참석자 전원 경례, 바로 하고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다.

나. 성원보고

○사무처장 : 총 재적인원 10명 중 참석 7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회장 :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제4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의사봉3타)

다. 회장인사

○회장 : 이사님들 수당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회회의 제4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다.

라. 보고사항

가) 전차회의록 처리

○회장 : 전차회의록 처리가 있으며 사무처장에 대한 전차회의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처장 : 회의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세히 말하다.

○회장 : 임시이사회(긴급) 회의록을 보고하고 이의 있는지를 묻다.

○회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한 동의를 묻다.

○다수이사 : 동의하다.

○다수이사 : 재청하다

○회장 : 전차회의록이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나) 개인회원 가입 현황 보고

○회장 : 사무처장에게 개인회원 가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처장 : 3차 임시이사회에서 2018년 12월 회원가입 요청한 71명에 대해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라고 하였다고 하다. 39명은 서류가 모두 들어와서 가입 승인하였고 32명중 12명은 서류를 보완하기로, 9명은 가입 거절, 11명은 연락이 두절상태라고 하다. 보완 서류를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확인하고 서류가 모두 접수된 분들에 한해 가입 승인을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하겠다고 하다. 회원가입일은 3월 22일로 하겠다고 하다.

회의자료 대체

○회장 : 보고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다.

○다수이사 : 동의하다.

○다수이사 : 재청하다.

○회장 : 보고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다.(의사봉3타)

바. 부의심의(안)

○회장 : 이번 임시이사회 세종광역시부식품등지원센터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회원규정 개정,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등 모두 3건이라고 하다.

1) 제1호 의안 세종광역시부식품등지원센터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안)

○회장 : 제1호 의안 세종광역시부식품등지원센터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안)을 상정하며 사무처장에게 설명하라고 하다.

○사무처장 : 회의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상세히 설명하다. 지난 3차 임시이사회에서 운영위원 위촉에 대해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을순 이사와 강성민 회원을 위촉한다고 하다.

○회장 :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며 1호 안 건 의의가 있는지 묻다.

○전재선 이사 : 동의하다

○다수이사 : 동의하다.

○다수이사 : 재청하다.

○회장 : 제1호 의안 세종광역시부식품등지원센터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최을순 이사와 강성민 회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2) 제2호 의안 회원 규정 개정(안)

○회장 : 제2호 의안 회원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며 사무처장에게 설명하라고 하다.

○사무처장 : 회의자료로 배부한 회원규정과 회의자료 18페이지의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라고 하다. 규정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대리행사 1항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하다. 개정 후 제4조1항 회원의 권리 및 대리행사 1항 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다.

○회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선거 선출 기간까지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선거위원회 회의 개최 때마다 참석하여 조항이나 다툼에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다. 또한 대리참석 투표는 단체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이기 때문에 직접투표의 원칙에 의해 대리투표는 사실상 인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하며 대리투표는 다툼이 여지가 많이 발생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다 설명하다.

○양혜경 부회장 : 동의하다.

○전재선 이사 : 동의하다.

○신소현 부회장 : 대리투표는 단체회원은 되고 개인회원은 안 되는 지 묻다.

○양혜경 부회장 : 동의하다.

○사무처장 : 단체인 경우 된다고 말하다.

○신소현 부회장 : 알았다고 대답 하다.

- 회장 : 단체회원은 대리투표가 인정되고 개인회원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다
- 장은정 이사 : 총회 전까지의 시간이 전일 까지 인지 총회 날 전 시간까지 인지 묻다.
- 사무처장: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선거규정에 참고하여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라고 말하다.
- 회장 : 선거관리명부 확정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말하다.
- 사무처장 : 부칙에 의하면 회원규정은 총회를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대로 되어있다고 하다. 회원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다.
- 장은정 이사 : 회원규정과 선거규정 중 어떤 규정이 상위규정인지 물으며,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의 내용이 상이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 사무처장 :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은 같은 제규정으로서 상위규정이 아니며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을 따른다고 하다.
- 회장 :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하였으므로 선거규정을 따라야 한다 말하다.
- 장은정 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동의하다.
- 회장 : 2호 안 건 이의가 있는지 묻다.
- 다수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재청하다.
- 사무처장 : 회원의 연회비 관련 사항으로 1월 15일 정기 이사회와 1월 18일 총회에게 개인회원 연회비 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하다. 2019년 연회비 부터 5만원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하는지 묻다.
- 회장 : 총회에서 의결 된 것이므로 2019년부터 연회비는 5만원이 맞다고 말하다.
- 다수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재청하다.
- 전재선 이사 : 회비납부는 후원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지 묻다.
- 사무처장 : 공익법인 세무안내에 의하면 회비는 후원금 처리가 안된다고 설명하다
- 양혜경 부회장 : 회비납부는 납부영수증 만 되고 후원금 영수증 발행은 안된다고 말하다.
- 신소현 부회장 : 후원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말하다.
- 사무처장 : 납부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다고 말하다.
- 전재선 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재청하다.
- 회장 : 제2호 의안 회원 규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3) 제3호 의안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안)

○회장 : 제3호 의안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며 사무처장에게 설명하라고 하다.

○사무처장 : 회장 선거에 관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하고자 한다고 하다

○회장 : 지난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이니 중요 부분만 설명하라 말하다.

○사무처장: 회의 전 배부한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보시라고 하고 상세히 설명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라고 하며 3차 임시이사회 때 보여드린 규정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제11조 입후보자자격, 제12조 후보자의 등록, 제16조 후보자의공석 시의 추천, 제17조 선거권, 제19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20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은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해 회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공한다고 하다, 제21조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는 기존에는 없었던 것을 추가하였다고 하다. 제21조의3 금지행위 등을 추가하였다고 하다. 제23조 선거공보, 제27조 투개표의 참관, 제30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제36조 이의제기, 제37조 규정위반처리, 제38조 준용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부칙으로 이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하다고 하다.

○전재선 이사 : 이사회 통과 날짜를 묻다.

○사무처장 : 오늘 4월 4일이라고 하다.

○회장: 중요한 부분은 기탁금을 정하는 것이며 기탁금으로 선거위원 수당, 법률자문 등 비용처리를 할 예정이며 남는 부분이 발생하면 협의회 운영비로 전용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다. 또한 다른 지자체 협의회는 300만원 정도의 기탁금으로 하지만 세종시 여건으로 볼 때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다.

○사무처장 : 변호사 자문 비용이 100만원 이라고 말하다.

○장은정 이사 :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에 실질적인 선거관련해서 15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것으로 예상한다면 최소한 25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의 대체비용에 대해 묻다.

○회장 : 선거에서 부족한 비용은 회원회비수입에서 충당할 것이라 말하다.

○신소현 부회장 : 회원의 자격을 말하며 추천 3인을 받는거에 대해 묻다.

○사무처장 : 17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설명하다. 연회비를 완납하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고 설명하다.

○신소현 부회장 : 이번 신규회원은 선거권이 있는지에 묻다.

○사무처장 : 현재 선거규정에 의하면 신규 71명은 해당이 안 되다고 말하며 변호사 사무실

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한다.

- 양혜경 부회장 : 단일 후보에 대해 묻다.
- 회장 :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고 말한다.
- 회장 :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
- 회장 : 선거 주요일정을 설명하다.

#### 선거일정자료 대체

- 전재선 이사 : 선거장소에 대해 묻다.
- 회장 : 장소는 사무처장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주차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하다. 선거일 전에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한다.
- 전재선 이사 : 선거인명부 게시는 언제 인지 묻다.
- 사무처장 : 이번 주 금요일 선거인명부 게시 공고를 할 예정이며 선거위원분들이 열람전에 검토 및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하다.
- 다수이사 : 동의하다.
- 다수이사 : 재청하다.
- 회장 : 제3호 의안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과 선거기탁금을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 바. 기타사항

- 회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겠다고 하다.

#### 사. 폐회선언

- 회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협의회에 늘 관심을 보내주시고, 오늘 임시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다.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3타)  
11시 20분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를 폐회하다.

2019년 4월 4일



기록자 : 최 지 선 (인)

확인자 : 사무처장 이 혜 윤 (인)

(인) 최지선  
(인) 이혜윤  
(인) 김양신  
(인) 장전전  
(인) 최재은  
(인) 월재  
(인) 설경현  
(인) 정순선  
(인) 순

설 경 현 정 순 선 순

재 혜 소 은 월 재 을

김 양 신 장 전 전 최

